

□ 붙임

# 제주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

1. 신고기간 : 2023.1.1.~2023.6.30.

## 2. 신고장소

- 국내 - 도내 : 도청 4·3지원과, 제주시·서귀포시 자치행정과, 읍·면·동 민원실
- 도외 : 당해 시도 소재 재외제주도민회, 제주도청 4·3지원과로 우편신고
- 국외 : 마·일 대사관 및 영사관, 재외제주도민회, 제주도청 4·3지원과로 우편신고
- ※ 우편접수처(63122) :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 제주특별자치도 4·3지원과

## 3. 신고대상

- 희생자 : '47. 3. 1을 기점으로 '48. 4.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'54. 9. 21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,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인
- 유 족 :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포함) 및 직계존·비속  
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

## 4. 신고방법

- 도, 행정시, 읍·면·동 및 재외 제주도민회, 재외공관, 재일민단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
- 제출서류
  - ① 희생자 신고 : 희생자신고서,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신청사유 소명자료 각 1부
  - ② 유족신고 : 유족신고서, 유족명단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제주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, 신청사유 소명자료
  - ③ 후유장애자 : 희생자신고서, 유족명단, 진단서(제주대학교병원, 국공립병원, 실무위 지정병원)

## 5. 신청사유 소명자료

-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, 제주4·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·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(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함)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 
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
-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

☞ 문의처 : 행안부 제주4·3사건처리과(044-205-6562~6564), 도 4·3지원과(710-8434~8436)  
 제주시 자치행정과(728-1961~1966), 서귀포시 자치행정과(760-3991~3993)  
 제주도내 읍·면·동 4·3업무 담당

#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